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4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김주영・김태선・박홍배

박상혁 • 이학영 • 강준현

김형동 • 문정복 • 박균택

손명수 · 정태호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 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2027년 12월 31일----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 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2027년 12월 3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있다.
- 1. ~ 3. (생 략)
- ⑥ ~ ⑧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2027년 1</u>
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